

2018.07.31

문의사항  
박민영 관세사 T/ 02-6011-3033 메일/ mypark@esein.co.kr  
박성희 차장 T/ 02-6011-3053 메일 / shpark@esein.co.kr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1. 개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요사항

#### ◇ 개정이유

세율별 물량비중 산정대상 기간의 수입실적이 없어 세율별 물량비중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환급물량 조정방법을 제시하여 과다환급을 예방하고 정확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 개정내용

- 1) 신생업체(신규 생산물품 포함) 또는 원재료를 불연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별표2 적용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7⑥)
  - ① 직전 3개월, ② 수출이행기간(2년) 내 세율별 수입물량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급물량 산출
- 2)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업체의 해당연도 비중 사용방법 및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환원 사유 명확화(\$8③)
  - 조정 적용 이후 해당연도는 계속하여 조정 비중을 사용(해석지침 사항),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을 경우 제7조 환원 적용
- 3) 서식 정비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신고, 조정신고방법의 조정에 따른 신고서식 보완(별지 제2호 서식)

2018.07.31

박민영 관세사 T/ 02-6011-3033 메일/ mypark@esein.co.kr  
박성희 차장 T/ 02-6011-3053 메일 / shpark@esein.co.kr

문의사항

## 2. 주요사항

### ◇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7조, 제8조	○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
○ 별지 서식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3조

###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 시행일자: 18. 09. .

###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 042-481-7873)
- 제출기한 : 2018. 8. 10.
- 제출방법
  - E-mail : yusangw001@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신규 조문 대비표

---

2018. 7.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 ⑤ (생략) (신설)</p> <p>⑥ 제1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p> <p>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p> <p>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p> <p>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정확한 환급을 위한 규정 정비 - 불연속적 원재료 수입업체(신생업체 포함)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조정 규정 신설</p> <p>○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한다.	
<p>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u>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u>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u>(신설)</u></p>	<p>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u>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u>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u>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u>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한다.</p>	<p>○용어통일을 위한 문구수정</p> <p>○정확한 환급을 위한 규정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환급 예방을 위해 임의적 조정 비율 적용 방지(해설서 내용 상향)</li> <li>- 비중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제7조 환원</li> </ul>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행정규칙 재검토 내용 반영에 따라 기한 변경</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의 환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p>	<p>○ 환급신청프로그램 개선 기간을 고려한 적용기간 설정</p>
<p>※ 별지 개정내용은 “붙임” 참조</p>		
<p>[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제7조제6항, 제8조제2항관련)</p>	<p>[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 ]법제시행의 기간에 대한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관련)</p>	<p>○ 전년도 또는 직전 3개월 수입물량 비중 조정 불가 시 수출이행기간 내 수입물량 비중조정방법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p>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 ]법제9조1항의 기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		
	제조장명				

품목번호 (HSK)	수입물품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산정 연도 (산정기간)
		합계		합계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	----	----	----

첨부서류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품목번호”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하되,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를 기재한다.
- “수입비중”란에는 세율별 수입비중(%)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하되, 수입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저세율의 순으로 1%씩 가산한다.
- “산정기간”란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는 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세원심사과, 042-481-7873)

제정 관세청고시 제2013-9호(2013. 4.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7호(2016. 1.2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 호(2018. .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환급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 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frac{\text{전년도 해당 원재료의 세율별 수입물량}}{\text{전년도 해당 원재료의 전체 수입물량}} \times 100$$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text{환급물량} \times \text{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2.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

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한다.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업체인 경우
2.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업체인 경우
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 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제11조(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3-9호, 2013.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7조제6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 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4호, '10.6.10)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6-7호, 2016.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8-00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의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명
1	0303902010	명란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1901902020	밀크 조제식품(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5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7	27090010	석유
8	2710193000	경유
9	2710195010	조유(粗油)
10	2710195020	운할유 기유(基油)
11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12	2804690000	규소(기타)
13	2841909000	(과)산화금속산염(기타)
1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9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20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1	3811210000	운할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22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23	382490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24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5	3910009010	실리콘오일
26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7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28	3926909000	플라스틱제의 제품(기타)
29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
30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1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32	7104901090	합성 귀석, 반귀석(기타)
33	7108121000	금가루(립프(lump)·빌릿(billet)·알갱이)
34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35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연번	품목번호	품명
36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7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제)
38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9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0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1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42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43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44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45	8479909070	선박용·어업 기기
46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47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48	8504409099	파워팩(기타)
49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51	8529909610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천연색 튜너)
52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기타)
53	8538909000	8535호-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4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55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56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5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5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9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60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61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62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63	90138011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기타 텔레비전용)
66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67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기타)
68	9101210000	기타 손목시계(자동권(自動捲)식)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1	0404102129	기타 변성유장(유당단백질무기질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	0404102129
2	0404102199	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2	0404102199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별표1	3	0904210000
4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4	0904220000
5	1003901000	맥주보리		5	1003901000
6	1005909000	옥수수(기타)		6	1005909000
7	1102909000	곡물가루(기타)		7	1102909000
8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8	1107100000
9	1518009090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기타)		9	1518009090
10	1701142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 98.5도 초과)		10	1701142000
11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 주정(알코올 용량 無關)		11	2207200000
12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12	2401103000
13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별표1	13	2401201000
14	2401202000	버어리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14	2401202000
15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15	2707300000
1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별표1	16	2707999000
17	27090010	석유	별표1	17	27090010
18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8	2710123000
19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별표1	19	2711190000
20	2804611010	태양전지 제조용 잉곳(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1	2804611090	태양전지 제조용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2	2804619000	기타 규소(규소 함유량 99.99% 이상)		20	2804610000
23	2804690000	규소(기타)	별표1	21	2804690000
24	2809201090	인산(기타)		22	2809201090

연번	품목번호	품 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25	2822001091	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조용)		23	2822001091
26	2825901020	산화티스텐		24	2825901020
27	2849200000	탄화규소		25	2849200000
28	2902191000	에틸리텐 노르보넨		26	2902191000
29	2902420000	메타-크실렌		27	2902420000
30	2902430000	파라-크실렌		28	2902430000
31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29	2903150000
32	290512209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기타)		30	2905122090
33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31	2905161000
34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2	2905193000
3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별표1	33	2905310000
36	2905391000	1,4-부탄디올		34	2905391000
37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35	2918113000
38	2921439099	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의 기타)		36	2921439099
39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별표1	37	2926100000
40	2929109000	이소시아네이트(기타)		38	2929109000
41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39	2932110000
42	2933710000	6-헥사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0	2933710000
43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1	3204160000
44	3503001010	젤라틴		42	3503001010
45	3505105010	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43	3505105010
46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별표1	44	3811210000
47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특사핀), 칼로단(ISO), 클로르데론(ISO), 디디타(ISO)[클로로페닐)에탄],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앨드린(ISO, INN), 엔도설펜(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48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 [린데인(ISO, INN) 포함]을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연번	품목번호	품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49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50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51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 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별표1	45	3824909090
52	3824999090	조계접결재(기타의 기타)	별표1	45	3824909090
53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46	3904100000
54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47	3906901000
55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48	3908102000
56	3910009010	실리콘오일	별표1	49	3910009010
57	3912110000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지 않은 것)		50	3912110000
58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1	3920620000
59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		52	3921191010
6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3	3921902000
61	4002190000	SBR·XSBR(기타)		54	4002190000
62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BR)(기타)		55	4002209000
63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6	4002399020
64	4011101000	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래디알 구조의 것)		57	4011101000
65	550932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아크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58	5509321000
66	5902100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59	5902100000
67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0	5902200000
68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별표1	61	7007191000
69	7112991000	귀금속 웨이트(잔재물)	별표1	62	7112991000
7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63	7202600000
71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제)	별표1	64	7403110000
72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별표1	65	7410110000
73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기타)		66	7502109000

연번	품목번호	품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74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67	7604101000
75	7801109000	정제한 납(기타)		68	7801109000
76	7801992090	납의 괴(기타)		69	7801992090
77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99.99%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연		70	7901110000
78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별표1	71	8407349000
79	8408202000	1,000cc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용 디젤엔진		72	8408202000
80	8408909030	제8429호용 기타 엔진		73	8408909030
81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별표1	74	8409911000
82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별표1	75	8409992000
83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별표1	76	8413304000
84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전용 또는 주요 부분품		77	8431200000
85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별표1	78	8481801090
86	8528521000	액정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79	8528521090
87	8528529000	기타 모니터(제8471호용으로 설계된 것)		79	8528521090
88	8528591090	기타 영상모니터 (기타)		79	8528591090
89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		80	8529909400
				77	8431200000
90	8542314090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기타)	별표1	80	8529909400
				81	8543909090
				77	8431200000
91	8542324090	메모리(기타)	별표1	80	8529909400
				81	8543909090
				77	8431200000
92	8542334090	증폭기(기타)	별표1	80	8529909400
				81	8543909090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제사유	1. (제5조제1호) 동질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2. (제5조제2호) 제조장 가동중단 또는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된 경우	[ ]
	3. (제5조제3호)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모되는 경우	[ ]
	4. (제5조제4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5. (제5조제5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6. (제5조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	------------------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

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및 규격	사용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가. 제5조제1호의 경우 : 유효기간 내 수출(모결공급 포함) 내역 및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질의 수입원재료 내역 나. 제5조제2호의 경우 :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사유서 다. 제5조제3호의 경우 : 생산공정도 및 생산공정별 소요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 마. 제5조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단축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대장
- 위 “단축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xx-#####(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목번호	품명	비고	기존 연번	'16년 이전 품목(HSK)
93	8542394090	기타 집적회로(기타)	별표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4	8542904090	집적회로 부분품(기타)	별표1	77	8431200000
				80	8529909400
				81	8543909090
95	85439090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기타)		81	8543909090
96	870829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82	8708290000
9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별표1	83	8708309000
9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별표1	84	8708400000
99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5	8708501000
100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6	8708700000
101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별표1	87	8708940000
102	8708951000	에어백		88	8708951000
103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별표1	89	8708999000
10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별표1	90	9013801930
10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기타 텔레비전용)	별표1	91	9013801990
106	9018399000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92	9018399000
107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별표1	93	9032899090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